

※ 본 자료는 2.7(화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

2023. 2. 7

관계기관 합동

# 순 서

I . 추진배경 .....	1
[참고 1] 국내 외환시장 구조	
II . 정책 여건 변화 .....	3
[참고 2] 외환시장 전자거래 개념 및 현황	
III . 개선방안 .....	5
1.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	
2. 개장시간 대폭 연장	
3.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	
4. 국내기관 역할 · 경쟁력 유지	
5.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	
IV . 기대효과 .....	12
[참고 3]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효과 예시	
V . 추진계획 .....	14

# I. 추진배경

◇ 국내 외환시장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**트라우마** 등으로 인해 **폐쇄·제한적 시장구조를 20년 넘게 유지** (참고1)

□ **(현황)**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무역 규모<sup>1)</sup>와 자본시장의 성숙도<sup>2)</sup>를 갖춰오는 동안, 외환시장 성장은 정체<sup>3)</sup>

- 1) 무역규모(수출입 합계, 억불): ('97)2,808 ('08)8,573 ('21)12,595 ('22)14,150
- 2) 주식 거래량(코스피+코스닥, 일평균, 억불): ('97)6.0 ('08)59.5 ('21)239.4 ('22)124.5
- 3) 원/달러 현물환 거래량(은행간 시장, 일평균, 억불): ('97)18.3 ('08)78.1 ('21)85.4 ('22)90.4

○ 기술혁신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글로벌 외환시장 및 역외 NDF<sup>1)</sup> 시장과의 격차도 크게 확대<sup>2)</sup>

- 1) Non-Deliverable Forward : 계약-만기 시점간 차액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
- 2) 日평균 거래규모(억불, 괄호는 전세계 비중 및 순위, 은행간 + 對고객, BIS):  
[현물환] ('16)286 (1.7%/13위) ('19)303 (1.5%/16위) ('22)351 (1.7%/16위)  
[NDF] 301 (23.1%/1위) 601 (23.3%/1위) 498 (19.5%/1위)

□ **(문제점)** 폐쇄·제한적 외환시장 구조가 환율안정성을 저해하고,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

① 한 방향의 거래유인을 가진 일부 수급주체의 환율 영향력 확대

▪ 과거 선박수주 호황 시기에는 조선사<sup>1)</sup>, 최근에는 해외투자를 확대 중인 개인·기관<sup>2)</sup> 등이 외환시장에 큰 영향

- 1) 조선사 선박 수주액(억불): ('06)660 ('07)975 ('08)714 ('09)186 ('10)463
- 2) 해외투자(직접+증권, BOP 기준, 억불): ('14)678 ('18)1,073 ('21)1,392 ('22.1-11)986

▪ 역외 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며, 시장불안시 원화에 대한 투기적 경로\*로 활용

\* 원화 결제 불필요 + 24시간 거래 가능 + 高레버리지 → 투기거래 등에 용이

② 원화 접근성 부족이 원화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을 저하시켜, 외국인 자금 유출<sup>1)</sup>과 내국인 해외투자<sup>2)</sup>가 지속 확대

- 1)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(조원): ('19)+1.6 ('20)△24.3 ('21)△24.9 ('22)△11.1
- 2) 내국인 해외주식 순매수(억불): +25.1 +197.3 +218.6 +118.9

③ 국내기관은 외환 관련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어렵고, 원화 비즈니스에 대한 강점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애로

## [참고 1] 국내 외환시장 구조

□ **(외환시장 개념)** 주식 거래소와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, 금융기관간 외환거래가 일어나는 장외 시장\*

\* 외환시장은 금융기관간 거래가 일어나는 은행간 시장(도매)을 지칭  
 ≠ 개인·기업 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 거래는 對고객 거래(소매)로 구분

□ **(국내 외환시장 구조)**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  
 → 국내 시장에서만 거래해야 하나, 시장참여·거래시간 등 제약

① **(역외거래)** 現 법령상 외국 금융기관간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 불가능 (→ 역외 원화시장 未형성)

▪ 환투기 방지 등을 위해 비거주자간 원화의 지급·수취 사유를 경상거래(수출입) 등으로 제한 [☞ 외국환거래규정]

\* [선진국] 비거주자 지급·수취 제한 없음 → 국제화 → 글로벌 시장 형성

② **(국내시장 참여)** 국내 외환시장에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 허용 + 거래 중개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만 가능 (외국환중개회사 인가제도) [☞ 외국환거래법·시행령]

\* [선진국]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인가 제도가 없고, 외국환중개회사가 금융기관의 국적, 법적 자격에 관계없이 자율로 참여기관 결정

▪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\*으로만 거래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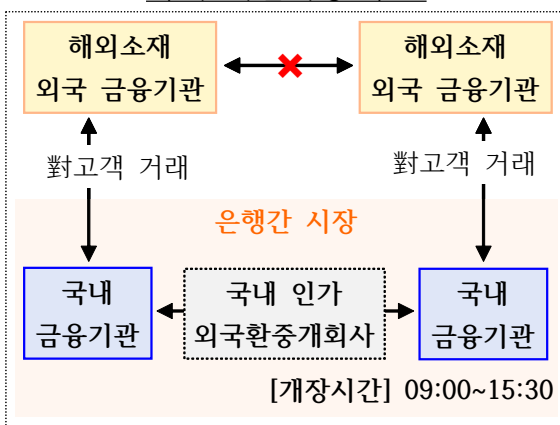
\* 국내기관이 은행간 시장의 환율에 수수료, 마진 등을 붙인 가격으로 거래

③ **(거래시간)** 국내 외환시장은 韓시간 15시반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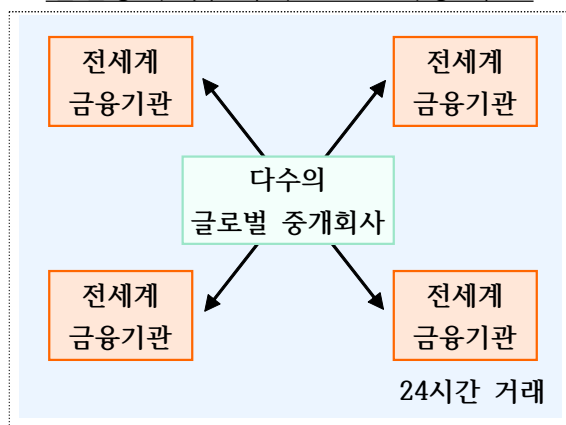
[☞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행동규범]

\* [선진국] 외국환중개사들의 글로벌 서비스망을 통해 24시간 시장 형성

국내 외환시장 구조



선진통화 및 역외 NDF 시장 구조



## Ⅱ. 정책 여건 변화

### ① (거시건전성 개선)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<sup>1)</sup>와 위험 관리 노력 등으로 대외부문 취약성이 크게 완화<sup>2)</sup>

- 1) 선물환포지션('10.10월), 외환건전성부담금('11.8월), 외화LCR('17.1월) 등 도입  
 2) 단기외채/보유액(기말, %): ('97)657.9 ('08)72.4 ('20)36.1 ('21)35.6 ('22.3/4)41.0  
 순대외채권(기말, 억불) :     △638     277     4,838     4,479     3,796

#### ○ 외환보유액 지속 확충<sup>1)</sup>, 다층적 외화유동성 공급망 마련<sup>2)</sup> 등 외부충격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응역량도 확보

- 1) 외환보유액(기말, 억불): ('97)204 ('08)2,012 ('20)4,431 ('21)4,631 ('22)4,232  
 2) 환매조건부 방식 외화유동성 공급제도(20.9월),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비은행권 지원제도(21.1월), 美 연준과 상설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(21.12월) 등

### ② (대외안정성 자신감 확보) 강화된 거시건전성을 바탕으로, 팬데믹 당시 환율<sup>1)</sup>, CDS프리미엄<sup>2)</sup> 등 대외부문이 과거 위기대비 안정

- 1) 고점, 회복기간(1,200원 상회 후 복구): [금융위기]1570.3, 248일 / [팬데믹]1285.7, 73일  
 2) 최대 변동폭(고점-저점, bp): [금융위기]645(47 → 692) / [팬데믹]37(20 → 57)

#### ○ 작년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주요통화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과거 위기시 원화만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것과 차별화\*

- \* 최대 절상률(%) : [외환위기<'97.10.1일비>] (달러)+5.1 (유로)△4.1 (엔)△17.9 (원)△53.6  
 [금융위기<'08.6.1일비>]     +22.2     △19.8     +19.7     △34.9  
 ['22년중<'21.12.31일비>]     +19.3     △15.6     △23.4     △17.4

### ③ (기술적 여건 성숙) 과거에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허용\* 외 대안이 없다는 점이 시장접근성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

- \* 뉴욕, 런던 등 역외 외환시장에서 외국 금융기관간에 원화가 자유롭게 거래 되도록 허용되면 역외 원화시장 개설되는 결과  
 ↳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불가능 + 역외 환투기에 대한 시장안정 기능 제한

#### ○ 다만, 최근 전자거래\*의 보편화(참고2)로, 거래시간·참여자의 확대가 뒷받침될 경우, 역외 원화시장 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비거주자의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 가능

- \* (과거) 사람간 수동 거래 ↔ (최근) 전자플랫폼으로 실시간 가격확인·주문·거래

#### ○ 국내 외환시장에도 은행별 전자플랫폼 등 전자거래 인프라가 도입('21.12월)되며 기술적 기반이 마련

## [참고 2] 외환시장 전자거래 개념 및 현황

① (개념) 가격제시(呼價), 주문 접수·매칭, 체결 등 거래의全过程이 전자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실행·완결

- 과거 전화·메신저를 이용한 사람간 수동거래(Voice 거래) 방식과 비교시, 거래시간·장소의 제약이 크게 완화

② (도입 요소) ①전자거래 인프라(API), ②對고객 전자플랫폼 필요

\*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: 다른 소프트웨어간 데이터 교환 표준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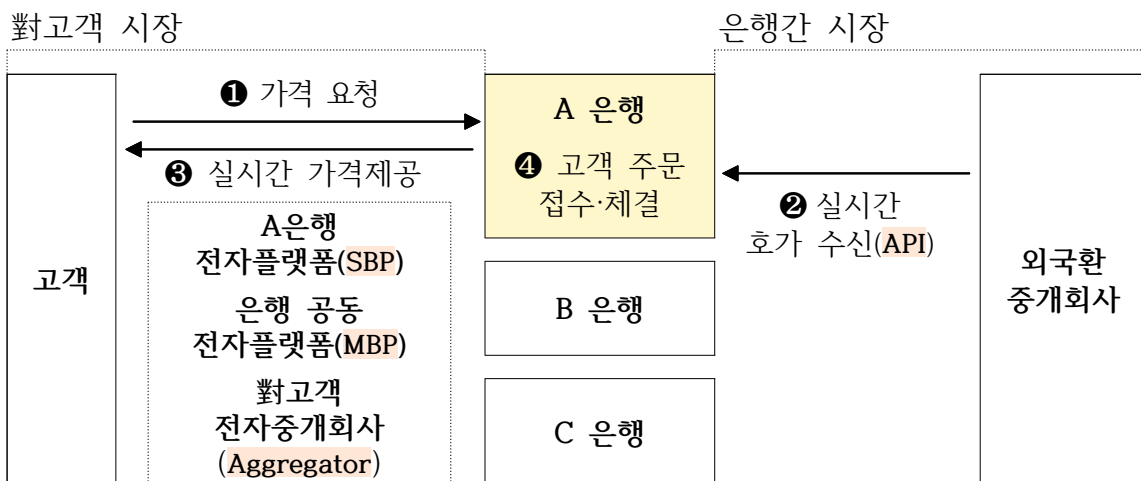
① (인프라) API를 통해 외국환중개회사 - 은행 - 對고객 전자플랫폼 등 분리된 시스템간 거래 정보를 실시간 교환 가능

② (플랫폼) 개별 플랫폼, 공동 플랫폼, 전자중개회사 등 구분

- (개별) 은행별 전자거래 플랫폼(SBP : Single-Bank Platform)
- (공동) 다수 은행이 전자거래 플랫폼을 공동 구축해 은행별 對고객 가격 제공, 주문·체결 완료(MBP : Multi-Bank Platform)
- (전자중개회사) 은행이 아닌 기관\*이 다수 은행과 연결하여 은행들과 고객간 거래를 중개 (Aggregator)

\* 글로벌 시장에서 FXall, FXGO, 360T, FX Connect 등이 서비스 제공 중

###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흐름



③ (현황)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자거래가 이미 보편화\*

\* 전세계 외환거래 중 전자거래 비중(% , BIS): ('16)55.1 ('19)56.3 ('22)57.6

- 국내도 '21.12월 전자거래 인프라(API)를 도입하면서, 개별·공동 플랫폼은 은행의 고유한 외국환업무로서 가능
  - 다만, 전자중개회사(Aggregator)는 법령상 규율에 공백

### Ⅲ. 개선방안

#### 목 표

대외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며,  
글로벌 수준으로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

#### 전 략

국내규제·감독체계에서 벗어난 역외 원화시장 개설 대신,  
국내 외환시장을 개방·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

#### 세부 과제

#### 3 大 정책 과제

국내 외환시장  
대외 개방

- ✓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(RFI :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)에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
  - 현물환은 물론, FX 스왑거래도 허용
  -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 경우 의무화 (거래 모니터링)

개장시간  
대폭 연장

- ✓ 1단계로 韓시간 02시(런던장 마감시간)까지 연장
- ✓ 추후 은행권 준비 등 여건을 보가며 24시간까지 확대

선진수준  
시장 인프라 구축

- ✓ 對고객 전자거래 활성화 +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(Aggregator) 도입
- ✓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제3자 외환거래 허용

#### 보 완 방안

국내 금융기관  
역할·경쟁력 유지

- ✓ 본-지점간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허용 및 원화차입 신고의무 면제
- ✓ 국내기관이 RFI의 신고·보고업무 대행 허용
- ✓ 국내기관-RFI간 규제 적용 등의 차이 보완

시장환경 변화에  
따른 거시건전성  
제도 등 보완

- ✓ 국내기관의 對RFI 선물환포지션 비율 별도 관리 검토
- ✓ 유사시 RFI의 자본거래 직접 통제 방안 마련
- ✓ RFI 거래 등에 대한 실효적 감독체계 구축

▶ 공론화, 법령 개정, 국내 금융기관 준비 등 거쳐 이르면 '24.下 본격 시행

◇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 (RFI\*)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

\*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

① (인가 대상)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 기관<sup>1)</sup> 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·증권사<sup>2)</sup> 등으로 제한

1)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은행, 증권, 투자매매·중개업

2) 국내 업권법상上記 범주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 +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법인·지점

○上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\*의 참여는 불허

\* (예) 외환전문투자회사(예 : PTF <Principal Trading Firm>)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·중개업 등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움 → 참여 불가

② (인가 요건)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 부과

① (적정 유동성)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\*(Credit Line) 확보

\* (산정 방식 예시) RFI와 Credit Line을 개설한 기존 참여기관들의 거래량 / 전체 시장 거래량 ≥ 일정 수준

② (식별정보 확인)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(예 : LEI<sup>1)</sup>),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<sup>2)</sup> 개설 여부 등

1) Legal Entity Identifier: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 ID ('11년 G20 도입)

2) 시장구조 개선방안 시행 이후에도 원화는 해외에서 결제될 수 없음 →

RFI는 원화결제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 원화결제용 계좌를 개설해야 함

③ (규제동등성 평가) RFI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, 감독구조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

❖ EU 규제 동등성 평가 사례

① (대상) EU 역내에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 소재의 투자업자

② (인가 요건) EU위원회의 해당 규제 동등성평가 결정<sup>1)</sup> 이후, 유럽증권시장 감독청(ESMA)이 제3국 감독당국과 협정<sup>2)</sup>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

1) 제3국의 규제·감독구조가 EU규제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

2) ESMA-본국 감독당국간 정보교환, 본국 법규 위반내역 통보, 현장검사 협조체계 등



④ (의무이행 협약) 법령상 의무 준수<sup>1)</sup> + 보고, 검사·감독, 자료 제출<sup>2)</sup> 협조 + 심각·중대한 의무 위반시 인가 직권취소 등

1) 외국환거래법령상 시세조작·건전거래 훼손 금지, 신고·확인 의무 등

2) 통계·감독 목적의 거래관련 정보, 경영현황, 본국 규제준수 여부 등

③ (개방 범위) RFI에게 은행간 시장내 현물환·FX 스왑\*거래 허용

\* 현재 현물환율로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차입(교환)하고, 만기도래시 계약당시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1년이하 만기의 단기 외화자금거래

○ 시장참여자로서 RFI에 정상적 영업환경을 제공<sup>1)</sup> 하고, 해외 시간대 유동성을 확보<sup>2)</sup> 하기 위해 FX 스왑시장도 개방

1) 글로벌 투자기관은 국내 투자시 현물환 외 환헤지를 위한 FX 스왑거래도 필요

2) '10년 이후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NDF 거래 비용 상승  
→ 해외투자자들은 NDF시장보다 국내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를 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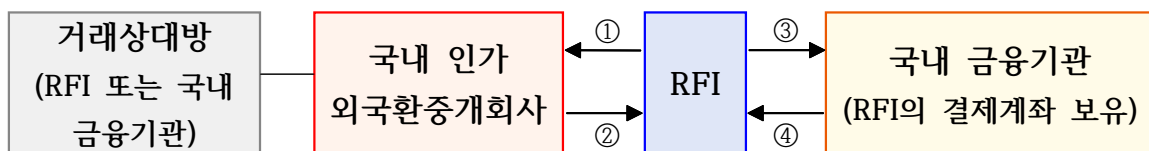
▪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는 RFI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, 역내외 고객 모두와 현물환·FX 스왑거래 가능

○ 통화스왑(CRS), 통화옵션 등 기타 외환파생상품 개방 여부는 개선방안 시행 後 시장여건, 거래수요 등 감안하여 추후 판단

④ (거래 모니터링)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경우에만 허용\*

\* 외국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1:1로 직접 거래시, 당국의 모니터링 불가능 + 사실상 역외 원화시장이 개설되는 결과

❖ RFI의 은행간 시장 거래 및 결제 절차



① RFI가 **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**를 통해 현물환·FX 스왑거래

②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는 RFI에 **거래체결 내역서** 전송

③ RFI는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받은 **거래체결 내역서**를 확인하고, 결제계좌가 있는 국내은행에 **동 서류를 첨부해 결제 요청**

④ RFI로부터 결제 요청을 받은 국내은행은 거래체결 내역서상 총액과 RFI의 결제 요청 금액을 **비교 대조**하여, 일치할 경우에만 결제 실행

## 2 개장시간 대폭 연장

【시장자율규제 사항】

◇ 개장시간을 **해외 영업시간까지 대폭 연장(15:30 → 익일 02:00)**

1] (연장 범위) 국내 은행권의 준비, 인력운용 상황 등을 감안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**韓시간 02시까지 우선 연장**

○ 추후 은행권 준비, 시장 여건 등을 보가며 **24시간까지 확대**

❖ **개장시간 관련 해외투자자들이 제기한 불편 사항**

① (환전) 증시 마감 후 환전 규모가 확정되는데, **외환시장도 증시와 동시 마감**  
→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시 **불리한 환율로 환전\* 불가피**

\* 외환시장 마감 후에는 은행이 포지션 정리(예 :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달러를 은행간 시장에서 他은행에 매도)가 어려워, 고객인 해외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수료 요구

② (벤치마크) 글로벌 투자기관은 통화별 보유자산 평가(Fixing)를 **런던 16시** (韓 01시) 환율로 계산하는데, 원/달러는 해당 시간에 **적용할 환율 없음\***

\* 실제 글로벌 투자기관은 우리시장 종가(15:30분)로 평가 → 다른 통화와 기준 상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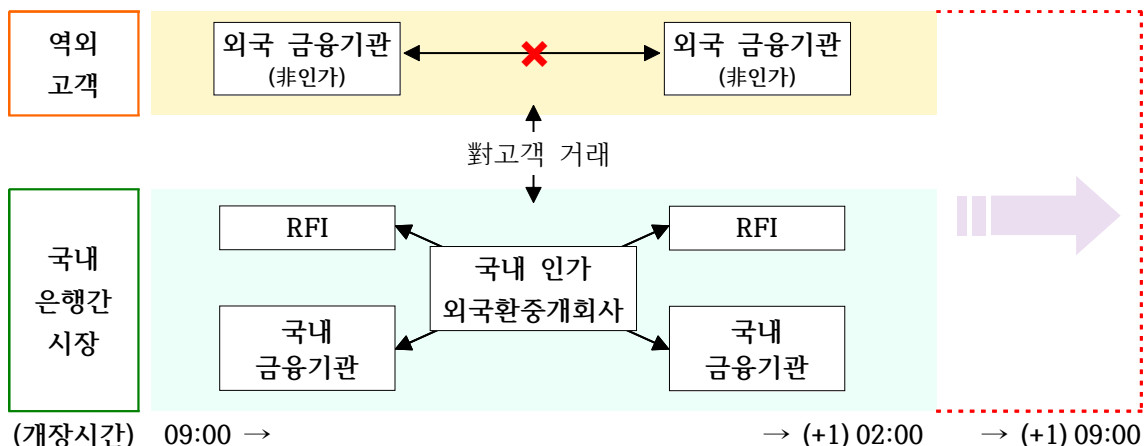
2] (벤치마크 환율) **매매기준율<sup>1)</sup>은 현재와 같이 9시~15시반 기준 산출**, 여타 벤치마크 가격<sup>2)</sup>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시 제공

1] 前거래일에 거래환율과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

↳ 법인 외화자산·부채 평가, 국외자산 양도차익 산정, NDF 차액정산 등 활용

2] (예) 15시반 체결가(現 종가), 02시 마지막 체결가, 전체 시장평균환율 등

❖ **외환시장 개방, 개장시간 연장시 국내 외환시장 구조 변화**



### 3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

#### ◇ 글로벌 수준의 거래, 결제 등 관련 인프라 마련

#### 1 (전자거래) 對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 고도화

- ① (인프라)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API를 RFI에도 연결 가능
- ② (플랫폼)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'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(Aggregator)'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 **【외국환거래법 + 시행령·규정 개정】**

#### ❖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(Aggregator) 도입 방안

- ① (등록 의무) 당국에 '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'로 사전 등록  
→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은 등록된 기관을 통해 對고객 서비스 가능
- ② (제한)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간 거래 중개는 불가, 이에 따라, 은행간 시장의 국내 외국환중개회사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인 자동 스트리밍 (Non-Disclosed Streaming) 방식\*은 불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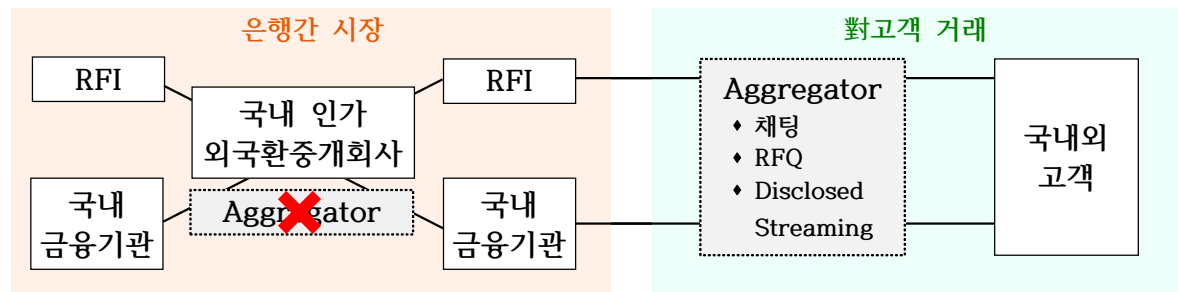
\*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최적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

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의 서비스 제공 방식 및 허용 범위

허용	채팅	✓ 당사자간 메신저로 가격 확인, 주문, 거래체결
	RFQ (Request For Quotation)	✓ 고객 호가 요청 → 은행별로 고객에 호가제시 → 고객은 최적 가격의 은행 선택 → 거래 체결
	Disclosed Streaming	✓ 은행이 고객에 지속적 호가 제시 → 고객은 은행별 호가 확인 후 최적 가격의 은행 선택 → 거래 체결
불허	Non-Disclosed Streaming	✓ 은행이 고객에게 지속적 호가 제시 → 고객은 은행별 호가 확인 없이 최적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 체결

#### ③ (보고) 등록된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가 당국에 거래내역 사후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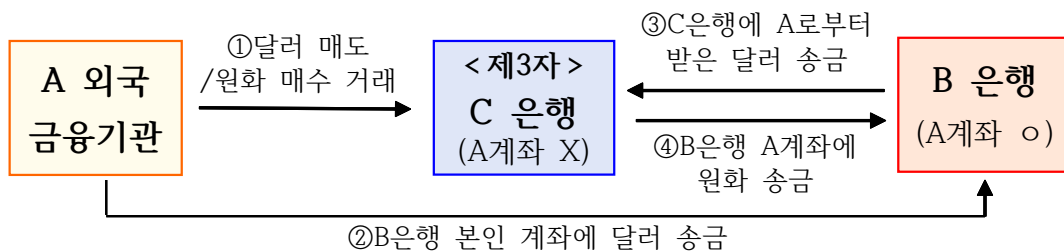
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 방안



② **(제3자 외환거래)**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 ('22.12월 既 발표)

-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\* 등 발생
  - \* 계좌 개설·관리 부담으로 외환거래의 상대방이 제한되면서 경쟁적 거래 불가
-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없이는, RFI가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 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해 시장형성 자체가 불가능

❖ 제3자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예시



③ **(동시결제<sup>1</sup>)** RFI가 CLS 국내 결제대행은행<sup>2</sup> (現 9개 은행)에 결제계좌<sup>3</sup> 개설시, 원화 관련 CLS 동시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

- 1] 외환결제리스크 해소를 위해 CLS(Continuous Linked Settlement)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(BIS 권고로 '02년 도입)로, 국가간 시차 없이 통화별 차액만 결제
- 2] 한은금융망에 접속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기관의 원화결제 대행
- 3] 실제 국내에서 증권·외환관련 영업중인 대다수 글로벌 금융기관이 동 계좌 보유

④ **(보고)** RFI가 한국은행이 운영중인 외환전산망을 통한 거래 내역 등 보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별도 보고시스템 마련

**4 국내기관 역할 · 경쟁력 유지**

【외국환거래법 시행령·규정 개정】

◇ 국내 금융기관에 거래·행정 등 지원 및 규제 적용 등 차이 보완

① **(거래)** 본점-지점\*간에는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허용하고, 원화차입 신고의무도 면제

\* [범위] ①외은지점-동일그룹 RFI, ②국내본점-동일그룹 해외 법인·지점(RFI로 인가)

- RFI가 국내 외은지점·본점을 통해 영업 편의를 제고\*하고, 원화 유동성도 용이하게 조달 가능

\* RFI가 해외 시간대 거래 이후에는 남은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거래상대방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 → 직거래로 국내 외은지점·본점에 남은 포지션 이관 가능

② **(규제)** 국내기관과 RFI간 영업 및 거시건전성 규제 등에서의 차이는 시장 수요·여건 등을 보가며 필요시 개선\*

\* (예) <現> 국내본점의 해외법인 원화대출은 신고, 해외지점 원화대출은 신고면제  
<改> RFI로 인가받은 해외법인의 경우, 국내본점의 원화대출 신고면제

③ **(행정)** RFI의 국내법령 준수 어려움을 감안하여, 동일그룹 內 국내 금융기관이 RFI의 신고·보고 업무\* 대행 허용

\*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거래의 신고·확인 의무, 당국에 대한 보고 등

④ **(보완)** 국내지점이 없는 RFI에 대해서는 선도은행\*에 신고·보고 등 업무위탁 허용,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차입시 신고의무 면제

\* 참여자 확대 등 시장구조 개선에 대비, 국내 기관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양방향 거래로 시장활성화에 기여한 은행(매년 6개<sup>1)</sup>) 선정, 인센티브<sup>2)</sup> 제공 ('22년 도입)  
↳ 1) '23년 선도은행: 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JPM, Credit-Agricole  
2) 양방향(매수+매도)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%까지 감면

## 5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

【외국환거래법 + 시행령·규정 개정】

◇ RFI의 참여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**거시건전성 제도, 컨틴전시 플랜**을 보완하고, **실효적 감독방안 마련**

① **(거시건전성)** 기존 국내기관 중심의 외환건전성 관리체계 보완

○ 예를 들어, 기존 선물환포지션 비율규제<sup>1)</sup>와 별도로, 국내 금융기관의 RFI를 상대방으로 하는 對RFI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산정·관리<sup>2)</sup>하는 방식 등 검토

1) 선물환純포지션 / 전월말 자기자본 ≤ (국내은행)50%, (외은지점)250%

2) 다만, 평시에는 모니터링에만 활용하며, RFI에 의한 시장불안 우려 발생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규제비율로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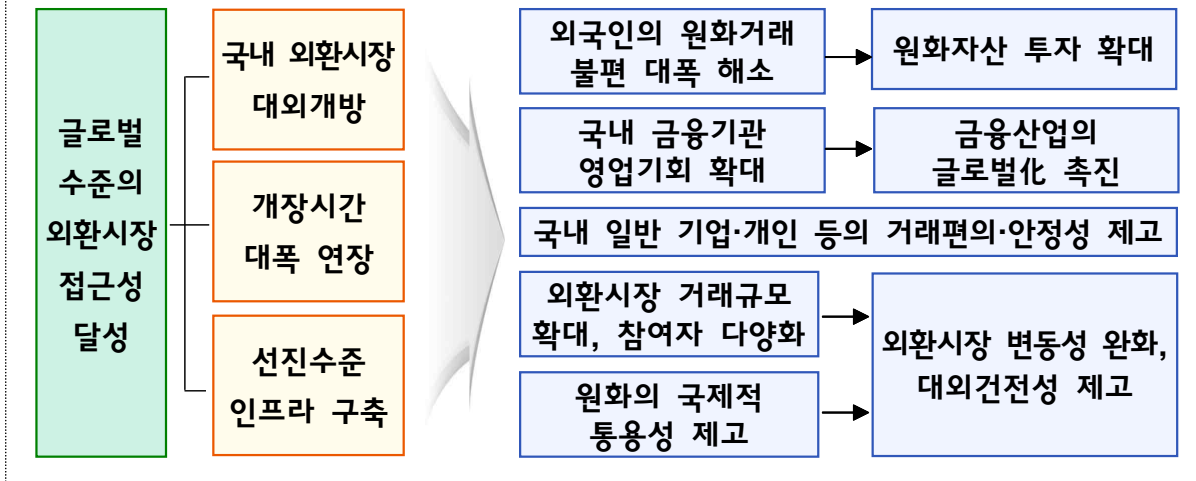
② **(컨틴전시)** 유사시 RFI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통제 수단도 구체화

\* 외국환거래법령에 자본거래 통제의 수단, 절차, 범위, 기간 등을 명확화

③ **(감독)** 현지 감독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거래, 신고 등 의무위반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, 직접 또는 위탁감사 등 실시

## IV. 기대효과

### ❖ 외환시장 구조 개선 효과



- ① **(금융 선진화 촉진)** 글로벌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→ 국내 자본시장·금융산업의 발전 촉진
  - 외국인의 원화거래 불편이 대폭 해소되면서 원화자산 투자가 활성화되고,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확대 등 글로벌화 견인
- ② **(외환거래 편의 제고)** 경쟁적 시장환경으로 서비스·비용구조 개선
  - 국내외 금융기관간 플랫폼·가격 경쟁 등을 유도해 외환거래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 제고
  -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·기관뿐 아니라,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등도 해외 영업시간에 자유롭게 환전 가능
- ③ **(시장변동성 완화)** 거래규모 증가, 다양한 거래동기를 지닌 시장 참가자의 확대로 시장안정에 기여\*
  - \* (예)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매수 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위한 외화매도
  - 특히,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역외 NDF거래 유인 감소
- ④ **(대외건전성 제고)**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이 제고되며 중장기적으로 무역결제, 자본조달시 외화의존도 및 환리스크 완화 기대

## [참고 3]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효과 예시

### 1 외국인 투자자

현 재	<p>① (거래시간) 다음날 국내 주식 매수를 계획 중이고, 美 CPI 결과 (韓시간 22:30)를 보고 <b>바로 환전</b>하고 싶으나, <b>우리 외환시장</b>이 <b>그 전에 마감</b>(15시반)됨에 따라, <b>환전이 불가능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야간시간대 <b>역외 외환시장</b>에서 NDF를 거래하여 <b>원화 매입 환율</b>을 미리 <b>확정</b>하더라도, <b>주식을 매수</b>하기 위해서는 <b>원화 현물</b>이 <b>필요</b>하기 때문에, <b>다음날 우리 외환시장</b>이 <b>개장</b>(09시)한 이후 <b>현물환 거래</b>를 <b>추가</b>로 해야함</li> </ul> <p>② (상대방) 평소 선진국 투자시에는, 런던에 소재한 <b>글로벌 은행</b>과 주로 거래하는데, <b>원화</b>는 <b>한국</b>에 있는 <b>금융기관</b>과만 <b>거래</b>가 가능</p>
--------	--

개 선	<p>① (거래시간) 시간 제약 없이, <b>원하는 시간</b>에 <b>원화 환전</b>이 가능</p> <p>② (상대방) <b>한국</b>에 있는 <b>금융기관</b>이 아니더라도, <b>우리 외환시장</b>에 <b>직접 참여</b>하고 있는 <b>글로벌 은행</b>과도 <b>거래</b> 가능</p>
--------	---

### 2 국내 개인

현 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야간시간에 <b>미국 주식</b>에 투자하려고 <b>환전</b>을 했으나, <b>외환시장</b>이 <b>마감</b>되어 있어, <b>시장환율</b>보다 높은 <b>假환율</b>로 <b>1차 환전</b>이 되고, 다음날 <b>우리 외환시장 개장</b> 이후에 <b>실제 시장환율</b>로 <b>정산</b> 받음</li> <li><b>시장환율</b>보다 높은 <b>假환율</b>로 <b>환전</b>됨에 따라, 당초 <b>계획</b>했던 <b>수량</b>만큼 <b>미국 주식</b>을 <b>매수</b>하지 못했고, 다음날 <b>정산</b>하여 <b>입금</b>된 <b>차액</b>을 다시 <b>은행계좌</b>로 <b>송금</b>해야 해서 <b>불편</b></li> </ul>
--------	---

개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야간시간에도 <b>시장환율</b>로 <b>바로 환전</b>이 가능해, 당초 <b>계획</b>대로 <b>투자</b>가 가능하며, <b>다음날 정산 절차</b> 등을 <b>거칠 필요 없음</b></li> </ul>
--------	--

### 3 국내 금융기관

현 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재는 <b>시간·장소</b>적으로 <b>비거주자</b>의 <b>우리 외환시장 접근성</b>이 낮아, <b>주로 국내 고객</b>만을 <b>대상</b>으로 <b>영업</b>하면서, <b>수익모델 창출</b>에 <b>한계</b></li> </ul>
--------	--

개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제3자 외환거래</b>, <b>對고객 전자거래</b> 등으로 <b>비거주자인 역외 고객</b>과의 <b>접점</b>이 <b>넓어</b>지며, <b>새로운 비즈니스 기회</b>가 <b>확대</b></li> </ul>
--------	---



## V. 추진 계획

◇ 법령 개정,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, **이르면 '24.7월 시행을 목표로,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**

- 시장구조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시장과 관련 업계에 혼란이 없도록 **시장참여자와 긴밀히 소통**하고, **호흡을 맞춰가며 차질없이 준비**
- 준비 과정에서의 논의, 시행 시점의 시장 여건 등을 보가며, 필요시 **시행 시기와 구조 개선의 폭과 내용 등 조정**

① ('23년) ①외국환거래법 개정, ②국내 금융기관 준비, ③해외투자자 홍보 등 통해 본격 시행 준비

① RFI에 대한 법령상 규율 등을 정립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'23.3/4분기 중 국회 제출

② 관계기관(금융위, 한국은행, 금감원 등), 업계 등이 참여하는 '외환 시장 구조 개선 추진 작업반' 구성·운영

▪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·지원하고, 국내 외환 시장에 전자거래시스템 확산 노력 강화

▪ 추가 구체화 필요 과제\*는 작업반 논의를 통해 보완·확정

\* (예) RFI 인가요건 상세 기준, 규제 역차별 해소, RFI 자본거래 통제 방안 등

③ 개별 면담, IR 계기 등 外 주식·채권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함께 '해외투자자 대상 범부처 합동 로드쇼' 추진 (2/4분기)

② ('24년)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의향 등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, 6개월여 시범운영을 거쳐 '24년 하반기 정식시행

○ 시범운영 기간 동안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결제 및 거래내역 보고 프로세스, 당국의 모니터링·감독상 이슈 등을 점검·보완

\* 시범운영 참여기관의 보고·결제 관련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치유 허용